

수원지방법원 2023. 7. 4 선고 2023가단519427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3. 6. 20.

판 결 선 고 2023. 7. 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8,245,636원 및 그 중 7,995,930원에 대하여 2023. 2. 8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, 9,6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,
나. 102,463,529원 및 그 중 100,000,000원에 대하여 2023. 2. 8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, 120,0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C(이하 ‘소외 회사’라 한다)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대출약정 및 신용카드이용계약을 각 체결하였으며, 피고는 같은 표 기재와 같은 근보증한도액으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.

순번	대출과목	대출일자(가입일)	약정금액	근보증한도액
1	신용카드이용계약	2018. 2. 8.		9,600,000원
2	일반자금대출	2018. 9. 13.	100,000,000원	120,000,000원

나. 소외 회사는 위 각 약정에 따른 거래를 하여 오던 중 이자를 연체하여 2023. 3. 23.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, 원고 약관에서 정한 대출약정 연체이율은 연 15%이고 신용카드대금 연체이율은 연 20%인바, 위 각 채무원리금은 2023. 2. 7. 기준 아래 표 기재와 같다.

순번	대출 등 원리금	원금	이자	연체이율
1	8,245,636원	7,995,930원	249,706원	연 20%
2	102,463,529원	100,000,000원	2,463,529원	연 15%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호증의 각 1, 2, 갑 제3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원고에게 위 표 순번 1 신용카드대금 원리금 8,245,636원 및 그 중

원금 7,995,930원에 대하여 위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23. 2. 8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, 근보증한도액 9,6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, 위 표 순번 2 대출 원리금 102,463,529원 및 그 중 원금 100,000,000원에 대하여 위 2023. 2. 8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, 근보증한도액 120,0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(설령 피고가 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더라도,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의 소송상 권리행사에 어떠한 제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).

3. 결 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.

판사 허정룡